

변경 대비표

1. 해당 투자신탁명 : 우리 G 기업가치향상장기증권투자신탁[주식]

2. 효력발생일 : 2022.05.20 (금)

3. 변경 사유 :

- 부책임용전문인력 삭제
- '21.10.2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른 문구 반영
- 『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』 폐지에 따른 명칭 변경 (전자단기사채→단기사채)
- 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정보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 업데이트

■간이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'21.10.21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	- 매입방법/환매방법: 제 X 영업일 - 대차대조표	- 매입방법/환매방법: X 영업일 - 재무상태표
요약정보		
투자비용-동종유형총보수	2021.07.30 기준	2022.03.31 기준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2021.08.17 기준	2022.05.02 기준
운용전문인력	2021.08.17 기준	2022.05.02 기준

■투자설명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'21.10.21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	- 매입방법/환매방법: 제 X 영업일 - 대차대조표	- 매입방법/환매방법: X 영업일 - 재무상태표
요약정보		
투자비용-동종유형총보수	2021.07.30 기준	2022.03.31 기준
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	2021.08.17 기준	2022.05.02 기준
운용전문인력	2021.08.17 기준	2022.05.02 기준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2.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연혁추가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① 책임운용전문인력	2021.08.17 기준	2022.05.02 기준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 김택주: 2020.08.14 ~ 현재	- 김택주: 2020.08.14 ~ 2022.05.19

②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동 내역		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]	2021.08.17 기준	2022.05.02 기준
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의 최근 변동 내역]	- 김택주: 2020.08.14 ~ 현재	- 김택주: 2020.08.14 ~ 2022.05.19
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투자대상 (투자대상의 종류/투자한도/투자대상의 조건)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②채권	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법 제 71 조제 4 호에 따른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	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이상이어야 하며, 법 제 71 조제 4 호에 따른 주식관련사채권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
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투자대상 (투자대상의 종류/투자한도/투자대상의 조건) 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③자산유동화증권	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	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
8.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.투자 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②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	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의 것은 제외한다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	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의 것은 제외한다)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

	<p>어음만 해당한다),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.)</p>	<p>어음만 해당한다),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.) 또는 어음,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에 투자하는 행위</p>
<p>12.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</p>	<p>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기준가격의 공고.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그 공고.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	<p>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)은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)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[이하 "순자산총액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)"이라 한다]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(당해 종류 수익증권)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, 1,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
<p>12.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.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</p>	<p>외국집합투자증권: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. 단,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</p>	<p>외국집합투자증권: 평가기준일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. 단,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</p>

(3)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.	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	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의 최종시가
13.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동종유형 총보수	2021.07.30 기준	2022.03.31 기준
제 4 부.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	2020.12.31 기준	2021.12.31 기준
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운용자산 규모	2021.08.17 기준	2022.05.02 기준
3.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 나.주요업무 (1)주요업무	-	⑩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 일치여부 확인
6.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.회사의 개요	KIS 채권평가	KIS 자산평가